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관

제 정 2004.12.21 정관 제1호
일부개정 2005.4.27 정관 제2호
일부개정 2008.2.28 정관 제3호
일부개정 2008.4.21 정관 제4호
전부개정 2008.12.22 정관 제5호
일부개정 2009.1.14 정관 제6호
일부개정 2009.9.17 정관 제7호
일부개정 2011.8.1 정관 제8호
일부개정 2013.1.14 정관 제9호
일부개정 2016.2.29 정관 제10호
일부개정 2017.1.18. 정관 제11호
일부개정 2017.08.21. 정관 제12호
일부개정 2018.5.9. 정관 제13호
일부개정 2018.10.26 정관 제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약칭 GFWRI)"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경기도의 가족·여성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실현하며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경기도의 가족·여성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개정 2018.10.26>
2. 성 인지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개정 2018.10.26>
3.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리더십 향상에 필요한 사업

4.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개정 2018.10.26>
6. 경기도 가족·여성관련 정보, 성 인지 통계체계 구축 및 확산
7. 정부, 지자체, 학계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위탁수탁사업
8. 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기타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업무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인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임원 중 원장을 상임이사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③ <삭제 2018.10.26>

제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연구원 소관 경기도 부지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원장)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0.26]

제7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연구원 소관 경기도 부지사
2.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3. 경기도 소관담당 국장
4. 경기도 북부청 소관담당 실장
5. 원장(직무대행자 포함)

③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10.26]

제8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감사는 경기도 소관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선임직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상황, 결산 및 기타 업무 집행에 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
4.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본조신설 2018.10.26]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도지사,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원장의 유고 또는 결원 시에는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원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0.26]

제10조(임원의 임명)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6>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③ <삭제 2018.10.26>

④ <삭제 2018.10.26>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② 원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제12조(임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중전의 제26조가 제12조로 이동 <2018.10.26>]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1.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실적 부진 등 기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0.26>

5. <삭제 2018.10.26>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③ <삭제 2018.10.26>

④ <삭제 2018.10.26>

제14조(임원의 직위해제) 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도지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본장 전부개정 2017.08.21.] [본조 신설 2018.10.26]

제3장 이사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원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익년도 본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10.26>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8.10.26>
- ④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17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17.08.21>
 -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26>
 -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6>
 - 9. 법령, 조례, 정관, 기타 제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10.26>
 - 10.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 원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26>
-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간 주요 사업실적
 - 2. 연구원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6>
 - 3. 연구원의 각종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6>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정관의 개정, 임원의 해임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차하위 직급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개정 2018.10.26>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20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8.10.26>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개정 2018.10.26>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21조(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3명과 감사 1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추천위원회

제22조(구성과 운영) ① 연구원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0.26>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연구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연구원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와 관련분야 지식 및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④ 연구원의 이사회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도의원을 포함한 도의 공무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26>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⑦ 연구원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23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삭제 2018.10.26>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본장 전부개정 2017.08.21]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연금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양여나 기부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은 재산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④ 법인의 재산은 [별지1]과 같다. <개정 2018.10.26>

⑤ 연구원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법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26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수입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제27조(수익사업) 연구원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중전의 제5조가 제27조로 이동 <2018.10.26>]

제2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 소관부서에 사업실적서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3. 기타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31조(회계감사) 원장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중전의 제22조가 제32조로 이동 <2018.10.26>]

제6장 직제 및 직원

제33조(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조직은 1본부 3실 체제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8.10.26>

②연구원의 정원은 26명(원장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6.2.29>

[조명 개정 2016.2.29]

제34조(직원) ①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7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

제36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귀속한다.

제38조(광고) 법인 설립·해산 등 중요사항의 광고는 경기도 관할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연구원의 사용료 등 징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8>

성 명	약 력	성 명	약 력
손 학 규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원(제14,15,16대)	이 금 자	경기여성단체협의회장
황 준 기	기획관리실장	최 운 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박 명 자	여성정책국장 전 도의원	한 혜 빈	서울신학대학교 복지대학원장
홍 수 자	여성국장	정 숙 영	여성정책과장
노 재 영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장 보 훈	장보훈세무회계사 대표
박 경 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손 학 규
황 준 기
박 명 자
홍 수 자
노 재 영
박 경 숙
이 금 자
최 운 실
한 혜 빈
정 숙 영
장 보 훈

부 칙 <개정 2008.12.22>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여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4>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여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9.1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여성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8.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8.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전에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장, 제12조, 제4장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면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5.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0.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개정 2018.10.26>

연구원의 재산

구 분	금 액	비 고
재 산	금 오천만원 (₩50,000,000)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1.18., 개정 2018.10.26>

위 임 장						
위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연 락 처	Tel			Fax	
		H.P			E-maill	
위임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참석 ▪ ○○○○○ 심의, 의견 제시 ▪ 				
수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임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Tel			Fax	
H.P				E-maill		
기타 참고사항						
<p>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p> <p>년 월 일</p> <p>위임인 : (인)</p> <p>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사장 귀하</p>						